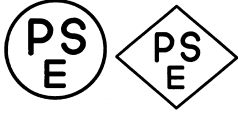


PSE (일본)

1. 개요

<p>■ 정의</p>	<p>Product Safety Electrical (일본전기통신형식승인)</p>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내의 전기전자제품에 적용해오던 전기용품취체법(Dentori 마크, T-Mark)이 개정 된 새로운 형태의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른 인증제도 - 신고 및 적합성검사를 통한 자율적 제도 (사후규제 강화) - 해당 전기용품의 일본내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마크취득 및 부착을 요구
<p>■ 관련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경제산업성 (www.meti.go.jp) - 일본의 인정검사기관 (전기용품안전법 제31조) - 외국의 승인검사기관 (전기용품안전법 제42조) - 국내대행기관 : 산업기술시험원 (제품검사/공장검사실시: www.ktl.re.kr)
<p>■ 대상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전기용품안전법 시행령 별표 제1호에 기재 - 특정전기용품(SP:Specified Products) : 112개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제품의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인정한 일본의 인정검사기관 또는 경제산업성 장관이 승인한 외국의 승인검사기관에서 적합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전선,휴즈,배선기구,전류제한기,변압기/안정기,발열기구, 전동력응용기계기구,전자응용기계기구,기타교류용전기기계기구, 휴대발전기 -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NP:Non-Specified Products) : 340개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선,전선관,휴즈,배선기구,변압기/안정기,소형교류전동기,전열기구, 전동력응용기계기구,광원응용기계기구,전자응용기계기구, 기타교류용전기기계기구등
<p>■ 적용국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p>■ 인증마크</p>	
<p>■ 적용규격</p>	<p>-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p>
<p>■ 인증절차</p>	<p>①사업신고(제조사 및 수입자) ⇨ ②적합성검사(일본의 인정검사기관/외국의 승인검사기관;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인 경우 자기책임하에 적합성검사 실시) ⇨ ③기술기준의 적합(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 기술기준) ⇨ ④검사 및 검사기록의 보존 ⇨ ⑤PSE마크표시</p>
<p>■ 기타</p>	<p>- 해외제조사업자 : 적합성검사신청, 적합성검사 합격증수령 - 수입사업자 : 기술기준적합확인 의무, 검사기록의 작성/보존 의무, 적합성검사증명서 사본보존 의무, PSE마크 표시의무</p>

2. 일반현황

전기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해 온 전기용품취체법(전취법; Dentori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Control Law, 1961년도에 제정)이 그간의 기술진보와 생활환경의 다양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 (METI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이 지금까지의 정부가 단속해 오던 것을 민간기관의 자율적인 규제로 전환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전취법을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전기용품안전법(전안법,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을 제정하여 2001년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실시해온 규제를 제3자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인증을 하게 하는 새로운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합리적인 규제 및 소비자 안전의 획기적인 향상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 규제체계를 자기확인 원칙으로
- 검사업무에 경쟁원리 도입
- 효과적인 사후관리 제도 도입
- 벌칙의 강화

3. PSE마크 제도 도입

- PSE 마크제도는 일본내의 전기전자제품에 적용해오던 전기용품취체법 (Dentori 마크,T-Mark)이 개정 된 새로운 형태 법인 전안법에 따른 인증제도이다.
- 전취법(Dentori)에서는 전기용품을 두 개의 범주인 갑종(A종)과 을종(B종)으로 나누고있는 반면, 새로운 전안법(Denan)에서는 특정전기용품(Specified Products, SP)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Non-specified Products, NP) 2개 분야로 나누고 있다.
- 특정전기용품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지침을 충족하는 별도의 인정기관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동제품이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인검사기관에 의한 적합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이러한 새로운 요구사항들은 금년 4월 1일 부로 이미 적용되어지고 있지만, 이전에 갑종(Category A)로 T Mark를 인증 받은 제품은 2006년 4월 1일까지 판매가 가능하며, 2002년 4월 1일까지 을종 (Category B)으로 인증 받은 제품은 2006년 4월 1일 까지 또한 판매가 가능하다.

4. 전안법의 주요 개정 내용

- 법률의 명칭을 전기용품 안전법으로 개정.
- 법률의 목적은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두고 민간사업자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용품에 의한 위험 및 장애 발생을 방지.
- 갑종 전기용품 및 을종전기용품을 폐지하고 새로 특정전기용품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으로 정의 함.
- 갑종 전기용품 제조사업자의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전기용품 제조 또는 수입사업을

하는 자는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함.

- 제조사업자 및 수입사업자가 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해당전기용품이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검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함.
- 형식인가제도를 폐지하고 특정 전기용품에 대하여 제조사업자 등은 경제산업대신이 인정 또는 승인 하는 검사기관에서 적합성 검사 증명서를 받아야 함.
- 지정시험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기관으로서 공익 법인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인정 검사기관 등을 설치하기로 함.
- 갑종전기용품의 T 마크를 폐지하고 특정 전기용품 및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에 붙는 새로운 마크가 각각 정해져 제조사업자 및 수입업자는 판매할 때까지 이 마크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함.(특정전기용품 마크는 <PS> E 이고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마크는 (PS)E 이다.)
- 업무 정지명령을 폐지하고 판매할 전기용품이 기술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등에 있어서 특별히 필요할 때는 해당형식의 필요 용품에 대해 표시를 금지시켜 유통방지를 도모.
-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서 특별히 필요할 때는 전기용품 회수를 도모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게 함.
- 위험방지명령 등의 위반에 대하여 법인의 벌금형 상한선을 1억엔으로 하는 것 외에 벌칙에 관한 필요한 벌칙에 관한 소요규정을 정비.

가. 개정내용에 따른 경과조치

2001년 4월 1일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사업을 하고 있는 형식구분의 전기용품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새로운 형식구분의 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는 신고가 필요하다.

나. 특정전기용품의 적합성 검사

(1) 적합성 검사 내용

- 해당 전기용품(형식구분별)의 기술기준에 의한 시험
- 해당 특정전기용품에 관련한 신고사업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의 검사설비 확인

(2) 형식인가에서 적합성검사로 이행

- 형식인가를 필한 갑종전기용품은 그 유효기간(3년, 5년, 7년)까지는 적합성검사 불필요 하지만 인가 유효기간 이후는 적합성검사가 필요하다.
- 그러나 2001.4.1이후 새로운 형식구분에 의한 전기용품 제조 또는 수입의 경우에는 적합성검사가 필요하다.

다. 전취법에 의한 구표시의 제조유효기간

- 전취법에 의한 구표시의 제조유효기간은 전기용품별로 전안법의 시행 일로부터 1년, 2년, 3년으로 한다.
- 갑종전기용품 : (예) 자동판매기(1년), 직류전원장치(2년), 접속기(3년)등
- 을종전기용품 : (예) TV수신기(1년), 전기냉방기(2년), 전선관(3년)등

라. 전취법에 의한 구 표시의 판매 유효기간

- (1) 전취법에 의한 판매유예기간은 전기용품별로 전압법의 시행 일로부터 5년, 7년, 10년으로 한다.
- (2) 전취법의 갑종 및 을종 전기용품의 구 표시 판매 유예기간
- 유예기간 5년 : (예) 전기 좌변기 (갑종), TV수신기 (을종) 등
 - 유예기간 7년 : (예) 직류전원장치 (갑종), 헤어카라 (을종) 등
 - 유예기간 10년 : (예) 배선기구 (갑종), 전선관 (을종) 등

마. 외국등록 제조업자의 전취법에 의한 구 표시의 제조 및 판매유효기간

- (1) 외국등록 제조업자의 전취법에 의한 구 표시의 제조 및 유예기간은, 전기용품별로 시행 일로부터 5년, 7년, 10년으로 한다.
- (2) 외국등록 제조업자의 갑종 전기용품의 구 표시 제조/판매 유예기간
- 유예기간 5년 : (예) 형식인가 유효일이 2006년 3월 31일 보다 빠른 경우
 - 유예기간 7년 : (예) 형식인가 유효일이 2008년 3월 31일 보다 빠른 경우
 - 유예기간 10년 : (예) 형식인가 유효일이 2011년 3월 31일 보다 빠른 경우

바. 외국에서 제조된 을종전기용품의 전취법에 의한 구 표시에 따른 수입유예기간

- (1) 을종 전기용품은 종래부터 일본 국내의 수입사업자를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사 업자의 진취법에 의한 구 표시의 수입유예기간은, 전기용품별로 시행일로 부터 1년, 2년, 3년으로 한다.

(2) 외국에서 제조된 을중 전기제품의 구 표시에 따른 수입 유예기간

- 유예기간 1년 : (예) 진취법에 의해 표시된 수입유예기간이 2002년 3월 31일 까지
경우
- 유예기간 2년 : (예) 진취법에 의해 표시된 수입유예기간이 2003년 3월 31일 까지
경우
- 유예기간 3년 : (예) 진취법에 의해 표시된 수입유예기간이 2004년 3월 31일 까지
경우

사. 전기용품 취체법과 전기용품 안전법의 주요항목 비교표

법률명칭 변경	전기용품취체법	전기용품안전법
법률의 목적 변경	정부인가제도 사전규제 및 사후 규제	제3자에 의한 인증을 활용한 자기 확인제도, 정부로서는 사후규제가 중심이다.
전기용품 범위	대상품목은 498품목 - 갑종 전기용품 : 165품목 - 을중 전기용품 : 333품목	대상품목은 454개 품목 - 특정 전기용품 : 111품목 -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 343품목
사업신고	갑종전기용품 : 제조사업자의 등록 - 외국제조사업자 등록 가능 을중 전기용품 : - 사업개시 신고	모든 전기용품 : 제조 또는 수입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전기용품 형식에 대하여 신고한다. 외국 제조 제품은 수입업자가 신고한다.
기준 적합 의무	갑종 전기용품 : - 검사기록 작성과 보존 - 표시의무 - 기술기준 적합 의무	모든 전기용품 : - 검사기록 작성과 보존 - 표시의무 - 기술기준 적합 의무
마크표시	갑종전기용품은 XXX표시 - 을중 전기용품은 무표시 - (1995년 개정시 XXX표시 폐지)	전기용품 대상 품목임을 표시한다. 표시로서 - 특정 전기용품은 XXX - 특정이외의 전기용품은 XXX
전기용품 인가/ 적합성 검사	갑종 전기용품은 지정 시험기관에 의한 형식검사와 정부의 형식인가	특정전기용품은 인정/승인기관에 의한 적합성 검사

법률명칭 변경	전기용품취체법	전기용품안전법
인가/ 적합성검사기 관	갑종전기용품 - 일본 : 지정시험기관 - 해외 : 특정외국시험기관	특정전기용품 - 일본 : 인정검사기관 - 해외 : 승인검사기관
표시사항과 판매.사용 제한	표시사항은 (갑종은, 형식인가번호, 제조사업자명등, 을종은, 제조사업자명 등)이 표시 되어 있지 않으면 판매. 사용할 수 없다	표시사항(마크표시, 제조사업자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판매. 사용할 수 없다
주된 사후 규제	사업등록 취소 형식인가취소 업무정지명령	표시 금지 위험 등 방지 명령(회수명령)

5. 제조사업자 및 수입사업자의 역할

가. 사업의 신고

전기용품의 제조 혹은 수입사업을 행하는 자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정한 전기용품 구분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정 양식에 의해 "전기용품제조(수입)사업 신고"를 경제산업대신 혹은 경제산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용품제조(수입)사업의 승계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 전기용품 제조(수입)사업 승계 신고서
- 전기용품 제조(수입)사업 양도 양수 증명서
- 전기용품 제조(수입)사업자 상속 동의 증명서
- 전기용품 제조(수입)사업자 상속 증명서

중에 해당되는 사항을 소정의 양식에 기재하여 경제산업대신 혹은 경제산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기용품의 적합성 검사

(1) 기준 적합 의무에 관한 검사 방식 등

제조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전기용품을 검사하고 검사기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가) 검사방식

○ 특정전기용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제조 공정에서 실시하는 검사

: 특정전기용품의 제조공정에서 실시하는 검사는 해당 특정 전기용품의 제조 방법에 대하여 해당 특정전기용품의 기술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동 제품의 구조, 재질, 성능에 대해 실시 할 것.

: 재료 또는 부품에 관련한 검사는 구입시 실시하는 수납검사에서 해당 검사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 검사로서 대신할 수 있다.

- 완성품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 특정 전기용품의 완성품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에 있어서 퓨즈(용기를 가진 온도 퓨즈로 그 용 기가 충전되지 않은 구조는 제외)는 외관에 대해, 아래의 좌측에 표기된 특정 전기용품에 관해서는 외관, 절연내력, 통전검사를, 그리고 표의 우측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품 1개마다 기술기준에서 정해진 시험방법 혹은 동등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 단 과전류 트립 특성과 누전 트립특성에 대해서는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시험 방법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방법을 적용할 것

특정 전기용품		검사항목
배선용 차단기		과전류 트립 특성
누전 차단기	동작시간의 종류가 고속형인 것	과전류 트립 특성 및 누전 트립 특성
	기타	과전류 트립 특성
암페어제용 전류 제한기		동작특성
별표 제1, 제6호에서부터 제 10호 까지 열거한 기계기구로서 온도 과상승 방지 장치로 사용되는 온도에 따라 동작하는 자동 스위치를 가진것		온도 과상승 방지 장치로서 사용하는 온도에 따라 동작하는 자동 스위치의 동작 특성

- 시료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 특정전기용품의 재료, 부품, 반제품 또는 완성품에서 추출한 시료에 대해 실시 하는 검사는 그 특정 전기용품의 주요 재료, 부품, 설계, 제조방법 또는 제조

설비를 변경하였을 경우 및 그 특정 전기용품의 재료, 부품, 반제품 또는 완성품을 기술하는데 적합하게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그 시료에 관련한 검사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 또는 동등이상의 방법을 적용한다.

: 재료 또는 부품에 관련한 검사는 재료 또는 부품 구입 시 실시하는 수납검사에서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에 실시하는 검사

- 완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 전선관류 및 부속품 그리고 케이블 배선용 스위치 박스, 퓨즈, 백열전구, 형광등 및 장식용 전등기구에 대해서는 외관에 대해, 벨트컨베이어와 이발용 의자에 대해서는 외관 및 절연 내력 검사를, 기타 령 별표 제 2에 열거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외관, 절연내력 및 통전 검사를 각 각의 제품에 대해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을 적용한다.

(나) 검사기록의 내용

- 전기용품의 품명과 형식구분 그리고 구조, 재료 및 성능의 개요
- 검사 실시 연월일 및 장소
- 검사 실시자
- 검사한 전기용품의 수량
- 검사방법
- 검사결과

(다) 검사 기록 보존 기간

- 검사 일로부터 3년간

(2) 적합성 검사방식

(가) 기술기준에 관한 검사

-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나) 검사설비에 관한 검사

- 신고사업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검사설비가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전기용품 구분	검사설비	기술 기준
휴대 발전기	치수측정기	마이크로미터, 버니어캘리퍼스 또는 이것들과 동등 이상의 정밀도로 지름 및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갖추고 있을 것.
	절연저항 시험설비	500V 절연저항계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정밀도로 절연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절연내력 시험설비	(1)변압기, 전압조정기 및 전압계(정밀도 1,5급 이상인 것) 또는 이것들을 내장하는 절연내력 시험기를 갖추고 있을 것 (2)2차 전압이 전류제한기의 절연내력 시험전압으로 쉽고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
	온도시험설비	전압조정기, 전압계(정밀도 0.5급 이상인 것, 전류계(정밀도 0.5급 이상인 것)그리고 열전대온도계를 갖추고 있을 것
	특성시험설비	전압조정기, 전압계(정밀도 0.5급 이상인 것) 그리고 전력계(정밀도 0.5급 이상인 것)를 갖추고 있을 것

6. 표시방법

가. 전기용품 안전법 마크

전기용품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전기용품에 대해 검사 기록 (적합성 검사 증명서)을 작성. 보존하고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특정전기용품에 표시하는 기호(시행규칙 제 17 조 관계)

: 전선, 퓨즈, 배선기구 등의 부품 재료로 구조상 표시 공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본 기호를 대신하여 <PS>E로 할 수 있다.



-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에 표시하는 기호(시행규칙 제 17 조 관계)

: 전선, 전선관류 및 그 부속품, 퓨즈, 배선기구 등의 부품 재료로 구조상 표시 공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본 기호를 대신하여 <PS>E로 할 수 있다.



나. 전기용품안전법의 구체적인 표시 예

전기용품 안전법에서 전기정격의 표시의무는 기술기준에 정해져 있음

전기용품취체법	전기용품안전법
<p>갑종전기용품</p> <p>T ○○-○○○○○ ○○○○○주식회사 ○○○V ○○○Hz ○○○W</p>	<p>특정전기용품</p> <p>PSE ○○○○○주식회사 ○○○V ○○○Hz ○○○W</p>
<p>을종전기용품</p> <p>○○○○○주식회사 ○○○V ○○○Hz ○○○W</p>	<p>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p> <p>PSE ○○○○○주식회사 ○○○V ○○○Hz ○○○W</p>

다. 전기용품 표시방법 (제17조 관계)

전기용품	표시 방법
전류제한기	표면에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소형단상변압기, 전압조정기 및 방전등용 안정기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단, 기계기구에 조립되는 소형 단상변압기는 포장용기 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신고사업자명(특정전기용품은 신고사업자명 및 검사기관명)을 표시할 경우에는 이것들을 생략할 수 있다.
소형교류전동기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전열기구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전동력 및 응용 기계기구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전기용품	표시 방법
광원 및 광원응용 기계기구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단, 기계기구에 조립되는 소형 단상변압기는 포장용기 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신고사업자명(특정전기용품은 신고사업자명 및 검사기관명)을 표시할 경우에는 이것들을 생략할 수 있다.
전자응용 기계기구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교류용 전기기계기구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휴대발전기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배선기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소수지 절연전선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전선 표면에 1m 이하마다(600A 절연전선, 고무 코드 기타의 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것에 있어서는 전선 피복에 넣은 테이프에 연속하여)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단, 특정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1권마다 검사기관 이름 또는 명칭(이하 <검사기관> 이라고 한다.)을 짐표에 표시할 때는 검사 기관명을 생략할 수 있다. 2. 불소수지 절연전선에 대해서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1권마다 짐표에 표시할 것 3. 오직 브레허브 주택 등의 구성재 패널 등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경우 이것을 생략할 수 있다.
전기온상선	발열체와 인증선과의 접지부 또는 여기에 근접하는 부분의 절연 피복 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할 것
전선관류 및 그 부속품 그리고 케이블 배선용 스위치 박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합성수지제 가요관, CD관,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이 외의 것은 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2. 합성수지제 가요관, CD관 또는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으로 관 표면에 표시하기 쉬운 것 및 1종 금속제 유연 전선관은 관 표면에 1m 이하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3. 합성수지제 가요관, CD관 또는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으로 관 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것 선단에서 50m 이내에 라벨 등으로 표시하고 동시에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전기용품	표시 방법
휴우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도퓨즈는 표면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단 포장용기 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법으로 신고사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이하 <신고사업자명> 이라고 한다.) 및 검사기관명을 표시할 경우에는 이것들을 생략할 수 있다. 2. 고리퓨즈는 표면에, 관형퓨즈는 관 표면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단, 포장용기 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신고사업자명 및 검사기관을 표시할 경우에는 이것들을 생략할 수 있다. 3. 포장퓨즈(관형 퓨즈는 제외한다) 는 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단, 전기기기용 퓨즈는 포장 또는 용기 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신고사업자명(특정전기용품은 신고사업자명 및 검사기관명)을 표시할 경우에는 이것들을 생략 할 수 있다.

7. PSE 인증을 취득한 품목 (최근 3년간 중소기업대상)

AC/DC Adaptor	비닐코드
Adaptor	아답터
CATV CONVERTER	외장형미디어플레이어
DF260S, DF280S	원격제어 스위치 2구
Massager	원격제어 콘센트
PVC Cord(VCTF)	음용수 자동판매기
PVC Cord(VCTFK)	전기냉온수기
Video Door Phone	전기코드릴
냉온수기	종합미용기
라미네이터	주방용 후드
모발말개	직류전원장치
무전극 형광램프 안정기	

8. PSE 인증서 (JET)

適合性同等検査合格書
Statement of Conformity Assessment

電気用品安全法第8条第1項に規定する技術基準及び同法第9条第2項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基準（法第9条第1項第2号に係る検査に係るものに限る）に適合していることを証明します

I hereby certify that the product mentioned below complies with the technical requirements stipulated in Paragraph 1 of Article 8 of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 (hereunder referred to as the Law) and the requirements defin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based on Paragraph 2 of Article 9 of the Law (limited to Item 2 of Paragraph 1 of Article 9 for inspection of the Law).

1. 合格書番号: JET5009-12011-1001
Statement Number
2. 発行年月日: 平成16年9月7日
Date of Issue September 7, 2004
3. 有効年月日: 平成23年9月6日
Date of Validity September 6, 2011
4. 申込者名
住所: K-
Address

氏名又は名称:
Name

5. 特定電気用品名: その他のビニルコード
Name of Product Other PVC cords
6. 型式の区分: 別紙のとおり
Type Classification See attached "Type Classification"
7. 製造工場名
住所:

氏名又は名称:
Name

8. 適用試験規格: 電気用品の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令第1項
Applied Standard for Testing Article 1 of the Technical Requirements of the METI Ordinance
別表第一 1 (1), (6) 及び (10)
Appendix 1 Section 1, (1), (6) and (10)
9. 適合性検査の方法: (Testing Method for Conformity Assessment)
1) 試験用の特定電気用品については、電気用品の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令に定める方法
With respect to testing for Category A products, the testing method is based on the technical requirements of the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tipulated in the METI Ordinance.
2) 当該特定電気用品に係る届出事業者又は事業場における検査設備については、電気用品安全法施行規則別表第四の検査設備の欄に掲げる検査設備ごとにそれぞれ同表の技術上の基準の欄に掲げる方法
With respect to inspection facilities required for Category A products at the factory, Testing Method described in the column of the technical requirements for each inspection facilities in the column of inspection facilities is shown in the Appendix 4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Law.

財団法人 電気安全環境研究所
Japan Electrical Safety & Environment Technology Lab.
理事長 吉澤 均
President Hiroshi Yoshizawa



東京都渋谷区代々木5-14-12 (5-14-12, Yoyogi, Shibuya-ku, Tokyo)